

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[별표 3]

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(제37조제1항 관련)

구분	산정기준
1.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	소요경비 전액
2. 제3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	$\text{소요경비} \times \frac{1}{2}$
3.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	$\text{소요경비} \times \frac{\text{의무복무 개월수} - \text{근무 개월수}}{\text{의무복무 개월수}}$

비고

1. “의무복무 개월수” 및 “근무 개월수”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.
2. 국외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매도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3. 제3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$$\text{추가반납액} = \text{소요경비} \times \frac{1}{2} \times \frac{(\text{의무복무 개월수} - \text{근무 개월수})}{\text{의무복무 개월수}}$$